

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

(제정) 1998-03-31 규정 제006호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94호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281호
(개정) 2014-02-03 규정 제346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(개정) 2016-05-13 규정 제403호
(개정) 2017-04-21 규정 제464호
(개정) 2018-08-24 규정 제49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10.15> <개정 2016.4.25.><개정 2016.5.13.><개정 2017.4.21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 <신설 2017.4.21.>

③ 위원은 기획홍보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종합정보관장, 학생생활관장 및 각 학과의 학과장으로 한다. <신설 2017.4.21.> <개정 2018.8.24.>

④ <삭제 2018.8.24.>

제3조(임기) ①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<삭제 2018.8.24.>

제4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단서조항 삭제 2018.8.24.>

1. 학칙,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입학, 진급, 졸업에 관한 사항
3.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
5.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7. 교육 과정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<신설 2014.2.3>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삭제 <2016.5.13.>

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 교무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7조(운영세칙)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1998. 3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구성된 교무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인정하되, 이 규정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교무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부칙(2000.10.19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 2. 3.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5.13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4.21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8. 24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